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기준재정수요 반영액 (세출 효율화)	기준재정수입 반영액 (세입 확충)
-280	-2,459

- ▶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5. 12. 29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(2013년, 2014년 결산대비)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❖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3,030	-280
인건비 절감	0	12
지방의회경비 절감	14	6
업무추진비 절감	19	32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-123	402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170	-2,785
지방청사 관리·운영	2,950	2,053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❖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-538	-2,459
지방세 징수율 제고	-229	-989
지방세 체납액 축소	-340	-1,502
경상세외수입 확충	349	308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-131	-118
탄력세율 적용	-184	-158
지방세 감면액 축소	-3	0